

2022년도 충청남도 예비 마을기업 모집 공고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계획에 의거 예비 마을기업 참여희망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년 충청남도 예비 마을기업 선정
- 지원규모 : 1년간 1천만원 이내(보조금 외 자부담20%이상)
 - 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 은 2천만원(자부담 10% 이상 부담)
- * 인구감소지역 :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2021.10.19.))

[예비 마을기업이란?]

-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선정기준 : 신규 마을기업 선정기준에 준하여 선정

2. 신청요건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

○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 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시·군·구)의 주민이어야 함

- 다만, ‘21년 이전’ 구 ‘를 지역으로 마을기업을 지정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 회원 비율을 70% 이상으로 함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초본, 재직 증명서 등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표기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예비마을기업 신청 시에는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非 법인의 공동체) 등도 가능

- 단, 약정체결 후 2개월이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법인 설립 후 보조금 지원)

※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충남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보조금은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이어야 함

- 자산적 성격의 경비(자산 구입비, 시설비 등)와 인건비·건물 임차료·공공요금 및 제세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2년 이내에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 시 가점(3점) 부여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지 2년 초과 시, 자동 지정취소)

3. 선정제외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 기초자치단체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기타 충남도지사가 참여를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제외
 -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외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 예시) 1~3회차 보조금과 우수마을기업 보조금을 동일 연도에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을 신청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모든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신청 불가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4.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입문교육 이수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p>※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p>

5. 추진일정(안)

○ 공모 및 접수('22. 3월) → 충남도 심사('22. 4월) → 행안부 통보('22. 4월)

추진내용	추진기간	비 고
공모 및 접수	3. 14. ~ 3. 28.	희망기업 → 시·군
신청단체 현지조사	3. 31. ~ 4. 7.	시·군, 지원기관
현지조사 결과 통보	4. 12.	지원기관 → 시·군
적격검토, 서류제출 등 추천	4. 18.	시·군 → 道
道 심사위원회 심사	4. 25.(예정)	道
선정결과 통보	4월 중	道 → 행정안전부

※ 상기일정은 신규마을기업 추가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변동있을 시, 신규마을기업 추가 공고로 안내

※ 선정 즉시 시군과 약정체결 → 약정체결 후 2개월이내 법인 설립 → 시군 예산 확보 후 사업비 교부(시군마다 일정 상이)

< 예비마을기업 공고설명회 안내 >

- ▶ (때 / 곳) 2022. 3. 21.(월) 14:00 / 충남스마트워크센터 이벤트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63)
 - ▶ (신청문의) 충남마을기업지원기관 (☎041-417-1107)
-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인원 제한을 둘 예정이니, 참여 희망자는 위 기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방법 : 선정 요건 등 적격심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6.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접수 : '22. 3. 14.(월) ~ 3. 28.(월) 18:00까지

○ 접 수 처 : 신청단체 소재지 시·군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우편 및 택배 등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단체: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 법인: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 등본(제출 마감 1개월 이내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7.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미 보완시 해당 신청서 반려처리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 및 참석 브리핑(도 심사), 문제사업에 대한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 또는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담당부서 및 연락처					
기관	부서	전화번호	기관	부서	전화번호
충남도청	사회적경제과	041)635-2283	마을기업 지원기관 (충남사회경제연대)		041)417-1107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3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041)840-8598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26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041)540-2871
서산시	시민공동체과	041)660-3218	논산시	뉴딜경제과	041)746-6028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3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041)350-3187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4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4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34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4074
홍성군	경제과	041)630-1355	예산군	경제과	041)339-7285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041)670-6163			

1.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p>(요건1)</p>	<p>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하고,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p>(요건2)</p>	<p>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p>(요건3)</p>	<p>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p>
<p>(요건4)</p>	<p>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p>
<p>(요건5)</p>	<p>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 (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출자금액 :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마을기업 신청 관련 자부담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마을기업 지정 신청일 전까지 법인 출자금이 1억원이고, 추가로 마을기업 자부담 (보조금의 20%) 1천만원을 출자한 경우, 총 출자금액은 1억 1천만원 -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도 법인 출자금으로 포함시켜야 함 - 기존 법인 출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여 출자금을 마을기업 자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div>

2.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요건1)	마을기업 회원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 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요건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 하여야 함
(요건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 해야 함
(요건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 시켜야 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요건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 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3.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요건1)	마을기업은 지역 내 소재 하고 있는 사업장 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요건2)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 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을 활용 한 사업을 하여야 함
(요건3)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문제 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 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요건4)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 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 은 지역주민 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
-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시·군·구)의 주민이어야 함
 - 다만, '21년 이전 '구'를 지역으로 마을기업을 지정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회원 비율을 70% 이상으로 함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4. 기업성

마을기업은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요건1)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 이어야 함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법인 설립 이후 마을기업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업운영 실적이 있거나 마을기업 회원의 경력이나 경험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요건2)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 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며 가능한 순수 민간시장과 상호보완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요건3)	마을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이어야 함 * 마을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및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행위를 하고 구성원 등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에만 마을기업 지정이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1

예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예비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1. 신청법인·단체 소개

법인·단체명	조직형태		협동조합 혹은 주식회사			
	설립일자		2015.3.3.			
법인·단체 연락처	사무실 전화 :		대표자 연락처	성명 :		
	fax :			개인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연락처	성명 :		
		개인전화 :				
주사업장 소재지	※ 도로명 주소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작성)		주사업장 소유관계	구분 : 자가 혹은 임대		
출자금	원	1인 최대 출자금	원	월 임대료 : 원		
당기매출	원	※ 해당사항이 있을 시 작성	당기순이익	원		
마을기업회	전체회원 ()명		지역주민 ()명, ()%		청년참여비율 ()%	
근로자	상근 근로자 ()명		※4대보험 가입자		비상근 근로자 ()명	
임원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택주소	개인전화	임기
	대표	김마을	1980.05.09	00시 중구 마을로 123(00동), 3층	010-1234-5678	3년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감사					

2022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대표자) 마을사랑협동조합(김마을) 인 또는 서명

00시장·군수 귀하

2. 신청법인·단체 소개

가. 마을기업 설립과정 - 마을기업의 회원 구성과 설립 배경을 시간 순서대로 기재

공동체성

-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 과정, 지역자원 및 수익모델 발굴 과정 등

나 ①. 마을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필요성

공공성

1)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

- 마을기업 설립 목적 및 운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
(예: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서)

※ 인구감소, 청년실업, 경력단절, 고령화 등 사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 해당 마을(지역)만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기업 설립 목적 등을 기재

2)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의 원인과 마을기업에서 해결해야하는 이유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작성

나 ②. 지역사회공헌 목표와 기대효과

공공성

1) 지역사회 공헌 목표

-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역주민과 지역에 어떠한 공헌활동과 봉사 활동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 수치(금액) 등을 기재
- 마을기업의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헌 포함(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등)
- 지역사회공헌목표는 1차년도 지원사업 종료 시 작성하는 실적보고서를 통해 점검하며, 2차년도 지원사업 선정 심사에 반영

2) 지역사회 공헌 기대효과

- 마을기업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작성
ex) 쪽방촌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낙과를 활용한 제품 판매로 농가 소득 증가 등

- 마을기업의 사업과 연관된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소개
- 마을기업 구성원들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 소개

- 1) 주요 제품·서비스 주매출이 발생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격 포함)
-
- 2) 주요 고객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인지 작성
-
- 3) 사업전략 마을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어떤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작성
-
- 4) 구성원의 전문성 마을기업 사업과 연관된 회원들의 역량을 소개
-

3.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3-1.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개요

사 업 명			
사 업 목 적	1. 2. 3.		
사 업 내 용	○ 세부사업 A의 내용 요약제시 ○ 세부사업 B의 내용을 요약제시		
사 업 비	신청 보조금	천원	자부담금 천원
가 점 항 목	※ 공고문을 참조하여 가점 해당사항이 있을 시 작성		
첨 부 서 류	신청 시 작성서류	1. 예비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1부(신청서식 1)	
		2.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1부	
		3. 마을기업 회원명단 1부(신청서식 2)	
		4.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신청서식 3)	
	법인내부 발행서류	5. 법인정관 1부 (*법인이 아닌 경우 제외)	
		6.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1부	
7. 자부담 통장(내역 정리)			
8. 근로자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외부기관 발급서류	9.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법인이 아닌 경우 제외)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법인이 아닌 경우 제외)		
	11.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 1부 (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증빙서류	* 법인 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3-2. 예비 마을기업 세부사업 계획

■ 세부사업 1 : 00사업				
세부사업 내용		1) 사업필요성 2) 사업내용 3) 사업운영체계 4) 사업전략(홍보·마케팅 상의 차별성)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세부사업 비목별 예산				
비목		내역	사업비 (천원)	비고 (산출근거)
경상 경비	운영비	인쇄비 등		
		홍보물		
		광고 등		
		재료비		
		기 타		
경상경비 소계				
사업 개발비	제품개발비			
	교육비			
	전문 컨설팅비			
사업개발비 소계				

※ 예비마을기업 신청의 경우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이어야 함

- 재료비는 최소화하고, 자산 구입비, 시설비와 같은 자산적 성격의 예산과 인건비, 건물 임차료, 관리비 등 사업장 운영 관련된 예산은 사용할 수 없음

■ 세부사업 2 : 00사업

세부사업 내용	1) 사업필요성 2) 사업내용 3) 사업운영체계 4) 사업전략(홍보·마케팅 상의 차별성)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세부사업 비목별 예산

비목		내역	사업비 (천원)	비고 (산출근거)
경상 경비	운영비	인쇄비 등		
		홍보물		
		광고 등		
		재료비		
		기 타		
경상경비 소계				
사업 개발비	제품개발비			
	교육비			
	전문 컨설팅비			
사업개발비 소계				

※ 예비마을기업 신청의 경우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이어야 함

- 재료비는 최소화하고, 자산 구입비, 시설비와 같은 자산적 성격의 예산과 인건비, 건물 임차료, 관리비 등 사업장 운영 관련된 예산은 사용할 수 없음

3-3. 연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22년)

※ 사업비(경상경비만 표기)를 함께 표기할 것

○ 2022년도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천원)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 (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개발비 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3-4. 사진(사업장 및 기존활동 사진을 설명과 함께 첨부)

사업장 전경 1	사업장 전경 2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 사진 1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 사진 2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 사진 3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 사진 4

기존활동 소개 1	기존활동 소개 2
기존활동 소개 3	기존활동 소개 4
기존활동 소개 5	기존활동 소개 6

서식2**마을기업 회원 명단**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특수 관계자 (해당인원 상호표기)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 동의여부
1	정다정	1987.11.23	충청남도 삼합읍 오룡길 1	010-1234-5678	2,000,000	제품생산		0	친필서명
2								0	친필서명
3								0	친필서명
4	이도						5의 부모	0	친필서명
5	이방원						4의 자녀	0	친필서명
6								0	친필서명
7								0	친필서명
8								0	친필서명
9								0	친필서명
10								0	친필서명
합계				계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 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 및 사업추진 관련 업무수행
수집·이용항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설립일, 기업경영규모, 성명(대표자, 사업수행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상훈,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 및 기업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업 종료 후 3년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정보제공 동의자의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보유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삭제처리 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충청남도, 시·군, 충남마을기업지원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 수행

대표자	(성명)	(서명)
실무책임자	(성명)	(서명)

2022년 월 일

00시장·군수 귀하